

현행 공공공사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사례 및 개선방향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중심으로-

현행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건설업계는 발주자·계약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 있지 못하며 또한 공사 계약조건 자체도 불합리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관행이 심하다는 불평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UR 협상과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의 시점에서 국내외 건설업체들에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정한 입찰계약제도의 정착과 운영이란 정책 목표 달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행 공공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공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공정 거래 질서 정착을 통해 선진화된 시공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의식 개혁과 계약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건설 시장 개방시 우리의 불합리한 계약 제도에 익숙지 못한 외국 업체로서는 국내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 및 발주자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분쟁 신청과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계약 조건의 개선 방향은 건설시장 개방시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내의 설계 변경, 보상, 분쟁 등의 계약 조항들을 표준화·구체화·국제화의 내용으로 보완하며, 특히 국제 기준에 걸맞는 클레임 처리 절차 및 분쟁 처리 기구를 설치할 계약 조건상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공공공사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이러한 불공정 행위 사례 유형의 원인을 발주자의 행태와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자체의 문제점에서 찾아봄으로써, 발주자와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고 대등한 계약 이행을 위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